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비산먼지 발생 화물 운송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의 설치 의무화 〉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56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 목 차

|                                                                 |   |
|-----------------------------------------------------------------|---|
|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2212256)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2 |
| 1. 비산먼지 발생 화물 운송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의 설치 의무화<br>(안 제24조의2 신설) ..... | 2 |

##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2212256)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8. 20.
3. 회 부 일 : 2025. 8. 2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비산먼지 발생 화물 운송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의 설치 의무화 (안 제24조의2 신설)

개정안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24조의2(비산먼지의 저감 의무 등)</p> <p>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을 통과하는 운행구간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 부칙<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검토의견

‘비산먼지’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sup>1)</sup>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sup>2)</sup>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비산먼지 발생사업<sup>3)</sup>으로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시멘트, 석탄, 광석을 6개 구간에서 운송하고 있으며, 최근 수송량을 살펴보면, 총 수송량은 1,612,249톤을 운송하고 있음.

< 2024년 한국철도공사 비산먼지 발생 품목 운송현황 >

| 수송품목    | 수송구간        | 수송량(톤)    | 운행횟수        | 비고   |
|---------|-------------|-----------|-------------|------|
|         |             | 1,612,249 |             |      |
| 석탄(유연탄) | 괴동 → 도담·입석리 | 875,152   | 3개 열차(주 5회) | 시멘트용 |
| 석탄(무연탄) | 동백산 → 동해    | 134,514   | 1개 열차(주 5회) | 발전소용 |
| 석탄(유연탄) | 삼화 → 쌍룡     | 66,651    | 1개 열차(주 3회) | 시멘트용 |
| 석탄(무연탄) | 철암 → 동두천    | 48,233    | 1개 열차(주 2회) | 연탄용  |
| 광석(석회석) | 고명 → 괴동     | 315,247   | 2개 열차(주 5회) | 철강용  |
| 광석(석회석) | 입석리 → 괴동    | 172,452   | 1개 열차(주 5회) | 철강용  |

자료 : 국토교통부

석탄 등의 화물은 운송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도심 거주 주민의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도심을 통과하는 운행구간에서 석탄 등의 화물을 운송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화물철도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먼저,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석탄 등의 운송업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또는 조치 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석탄 등의 운송시 비산먼지 억제 시설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철도사업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2025년 한국철도공사의 비산먼지 발생 품목 운송상황을 보면, 운송시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서 덮개 또는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한 표면경화제<sup>4)</sup>를 사용하고 있음.

---

4)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21.1) p.117~118

○ PAM(polyacrylamide, 고분자 응집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토양유실 방지제로 사용, 분자량 1,000 이상의 수용성 고분자물질로써 강력한 흡착관능기를 가지는 화합물임. 이를 통해 토양 입자간 결합력을 증대하여 수식, 풍식에 의한 유출을 저감시킴. 비산먼지 저감효과(99.6%)가 우수한 것으로 연구됨('12, Mohammad Movahedan et al.)

< 한국철도공사 비산먼지 발생 품목 운송현황 >

| 수송품목    | 수송구간        | 비산먼지 예방 |
|---------|-------------|---------|
| 석탄(유연탄) | 괴동 → 도담·입석리 | 표면경화제   |
| 석탄(무연탄) | 등백산 → 동해    | 덮개      |
| 석탄(유연탄) | 삼화 → 쌍룡     | 표면경화제   |
| 석탄(무연탄) | 철암 → 동두천    | 표면경화제   |
| 광석(석회석) | 고명 → 괴동     | 표면경화제   |
| 광석(석회석) | 입석리 → 괴동    | 표면경화제   |

자료 : 국토교통부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개정안 중 ‘도심을 통과하는 운행구간’은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하위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나. 국토교통부 의견

시멘트, 석탄의 운송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조치 의무 대상으로 이미 규정되어 지자체가 관리 중임.

코레일은 시멘트, 석탄, 광석을 운송 중이고, 화물 상·하차 시에 화주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조치 중임.

철도사업법은 사업 면허·약관 등 일반적인 운영 사항 규율하기 위한 법이므로, 화물운송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조치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82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9조(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확인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1.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물을 적재하였는지 여부
3. 세륜 및 측면살수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